

## 기숙사 사생수칙

제정  
개정 2018. 7. 30

**제1조(명칭 및 목적)** ① 이 수칙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 제6조에 따른 기숙사 사생수칙(이하 ‘수칙’)이라 한다.

② 이 수칙은 사생들이 기숙사에서 지켜야할 사생수칙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하며 질서 있는 공동생활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생활원칙)** ① 사생은 기숙사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질서 있는 공동체로 만드는데 협력하여야 하며, 특히 사내에서의 음주가무, 흡연, 도박, 폭력행위 및 기타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학생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.

② 사생은 허가 없이 외부인과 동반하여 사내 출입하거나 숙박해서는 안된다. 단, 직원의 허가 시에는 예외로 하고 방문객(부모님 등)의 출입 시에는 신분증을 관리실에 제시하고 방문증을 받아 패용해야 한다.

③ 사생은 배정받은 방 및 자리를 임의로 바꾸어서는 안된다.

④ 관장 및 직원은 필요 시 사내 출입인원의 사생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.

⑤ 사생은 공동생활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장 및 관계직원의 지도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.

**제3조(생활점검 및 점호)** ① 사생은 실내 청결상태, 시설·비품 이상 유무, 인원 점검 등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점검·지도 및 사생들의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해 시행하는 생활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.

② 생활점검은 필요시 수시로 실시하며, 점호는 사생회 주관으로 평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③ 관장 또는 직원이 지정한 날짜(Green Day ; 매주 화요일)에는 호실 및 공동생활공간의 청결상태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.

**제4조(보건 및 위생)** ① 사생은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질병 예방수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, 특히 결핵, B형 간염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검진결과서를 입사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법정전염병이 발병한 경우 사생은 이를 사무실에 알리고, 즉시 치료 및 격리 등 기타 적절한 조치에 동의하여야 한다.

③ 사생은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질병의 예방을 위해 항상 청결상태를 유지해야 한다.

- ④ 질병이 발생한 경우 즉시 치료하여야 하며 일체의 치료 경비는 본인이 부담한다.
- ⑤ 사생은 기숙사에 애완동물을 반입하거나, 기를 수 없다.

**제5조(게시물)** 기숙사 내 게시물 부착은 직원의 승인을 얻은 후 게시하여야 한다.

- 제6조(공용물 사용)**
- ① 사생은 기숙사의 공용 시설과 비품을 아껴서 사용하며, 파손이나 손실 발생 시 실비 변상하여야 한다.
  - ② 사생은 화재의 위험이 있는 모든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, 허가되지 않은 전자제품이나 전열기구를 보유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.

**제7조(순찰)** 관장 및 관계직원은 수시로 각 호실에 대하여 순찰을 할 수 있으며, 이때 모든 사생은 순찰활동에 응하여야 한다.

- 제8조(출입 및 외박)**
- ① 사생은 정해진 기숙사 출입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. 단,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    - 출입가능시간 05:00 ~ 23:00
    - 출입제한시간 23:00 ~ 05:00 (출입문 폐쇄)
  - ② 23:00 점호 이후 외출을 원할 시 '외출관리대장'을 작성하고 외출할 수 있으며 02:00까지 복귀를 원칙으로 한다.
    - 02:00에서 05:00까지는 건강상의 이유로 직원에게 보고 된 병원 출입을 목적으로 한 외출을 제외한 기타 어떠한 경우라도 출입이 불가능하다.
  - ③ 사생은 사생의 안전여부 확인을 위하여 점호일에 외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신청하여야 한다.
    - 외박신청은 [CK4U-기숙사 메뉴]에서 신청 후 승인받아야 한다.
    - 평일(월~목) 외박은 공적인 사유만 인정되며, 실습 및 학과수업 등의 사유는 반드시 학과에 실습 실 사용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.
    - 주말(금~일)은 점호가 없으므로 외박신청은 생략한다.

**제9조(상·별점 제도)**

- ① 상·별점부과는 모든 사생을 대상으로 한다.
- ② 상·별점은 정도에 따라 <상·별점 기준표>에 의거 점수를 부과한다.
- ③ 누적별점이 15점 이상인 경우에는 스쿨 및 가정에 통보 및 면담을 실시하며 강제퇴사조치하고, 졸업시까지 기숙사 입사 및 기숙사내 모든 시설 이용을 불허한다.
- ④ 누적별점이 10점 이상인 경우에는 스쿨 및 가정에 통보 및 면담을 실시하며, 차 학기 입사를 불

허한다

- ⑤ 수칙위반행위를 다수가 공동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각각에게 같은 별점이 주어진다.
- ⑥ 상·별점을 받은자의 명단과 별점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, 공고기간은 일주일을 원칙으로 한다.
- ⑦ 상·별점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자는 7일 이내에 사무실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이후에는 부여된 상·별점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.
- ⑧ 수칙 위반 시 별점 부여와 봉사활동 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다.

### 부 칙

(시행일) 이 수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(시행일) 이 수칙은 2018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## <상·별점 기준표>

### ■ 상점 기준표

순	세 부 내 용	상 점	비 고
1	기숙사 별점 내용을 신고 또는 제지한 자	3점	신원 절대 보장
2	정기 및 불시 호실 점검 시 청결하게 관리한 자	2점	
3	기숙사 주최 행사 참여자(단, 상점부여 행사에 한함)		
4	기숙사를 위한 봉사활동 참여자	1~3점	
5	기숙사 생활의 모범이 되는 행동으로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		
6	분실물 습득한 후 사무실에 신고한 자	1점	

### ■ 별점 기준표

순	세 부 내 용	별 점	비 고
1	사내 기물, 시설물을 고의로 파손 또는 훼손하는 행위	15점	강제퇴사+변상
2	절도·방화·폭행, 인화물질 및 위험물품 반입 행위	15점	강제퇴사
3	남·여 사생의 호실 출입행위	15점	강제퇴사
4	누적별점 15점 이상인 사생	15점	강제퇴사
5	흡연(전자담배 포함), 음주 행위를 한 사생	15점	강제퇴사
6	도박, 취사 행위를 한 사생	10점	봉사활동
7	누적 별점이 10점 이상인 사생(다음학기 입사불가)	10점	봉사활동
8	비사생을 숙박/입실한 행위(비사생 스쿨포인트 차감)	7점	호실 전체
9	지정된 출입구, 배정된 호실(자리)을 이용하지 않는 행위	7점	
10	점호불참, 무단외박을 한 행위	3점	1일 기준
11	실습실 종료 후 미 복귀한 행위	3점	미확인도 동일
12	호실 정돈 및 청소 불량 - 수시점검	2점	호실 전체
13	허가되지 않은 전기제품 반입 및 사용행위	2점	호실 전체
14	고성방가, 쓰레기무단투기, 점호 이후 호실왕래 등을 한 사생	2점	
15	지정장소 외 음식물 반입 및 미반출	2점	
16	귀사시간 이후 출입한 자	2점	
17	성희롱, 성폭력 행위를 한 사생	$\infty$	판단 후 결정
18	기타 부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행위를 행한 사생 (예: 퇴실 후 숙실상태가 매우 불량한 경우, 생활점검 시 지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같은 행동을 지속하는 경우 등 상기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나 기숙사의 공동생활 유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한 경우)	$\infty$	판단 후 결정

※ 누적별점은 다음 학기 입사에 영향(10점 이상: 다음 학기 입사불가, 15점 이상: 추후 입사불가)

※ 강제퇴사 시 관리비 환불 불가

※ 누적별점 10점 이상일 경우 : 스쿨 & 가정 통보 후 면담(지도) 실시

◇ 주소: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청강가창로 389-94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청강 or 비전학사 호실+이름

◇ 전화: 청강학사 (女) 031-639-5739/4570 / 비전학사 (男) 031-639-5766/4599

◇ 팩스: 031-639-5727

## 서 약 서

학 사: 청강학사 ( ) / 비전학사 ( )

호실 - 자리번호:

성 명:

상기 본인은 기숙사 운영규정 및 사생수칙의 내용에 동의하고,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 합니다.

201 년 월 일

성 명 : (서명)

기숙사 관장 귀하